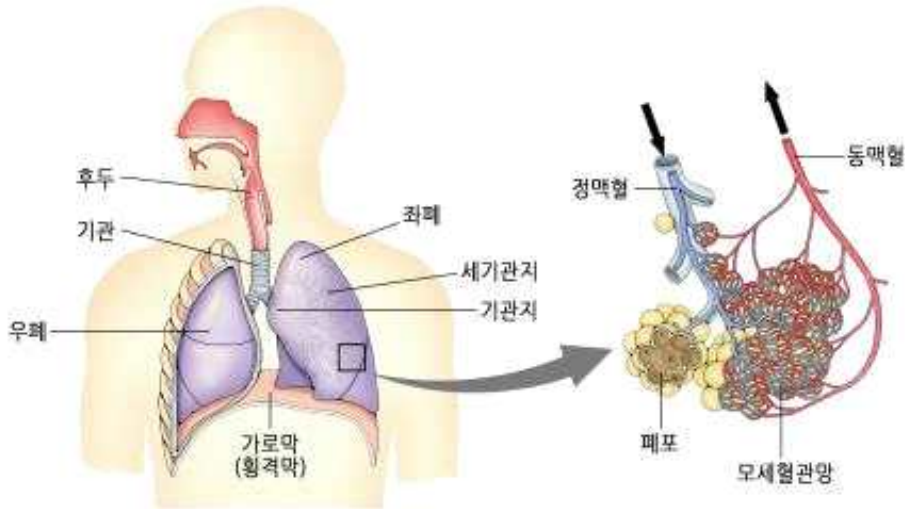


제6절 호흡기의 장애



<호흡기계의 구성>

1.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

장애등급	장애정도
1급 8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-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고도 이상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자
2급 1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중등도 이상으로 집안에서 이동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
3급 1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경도 이상으로 평지에서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
4급 1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폐를 이식받은 자

2. 인정요령

가. 호흡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.

- (1) 호흡기의 장애는 호흡곤란정도, 흉부 X-선 촬영, 폐기능검사, 동맥혈가스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소견에 의해 판정하며, 필요한 경우 흉부 CT, 기관지내시경, 운동부하 폐기능검사, 폐환기-관류 동위원소검사 및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판정한다.
- (2) 폐질환에 폐결핵 등 다른 폐질환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 합병증의 경중, 치료법, 종래의 경과, 치료과정, 활동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정한다.
- (3) 호흡기장애 판정 시 기존장애의 중증정도는 흉부 방사선(흉부 X-선 등) 촬영결과, 폐기능 관련 검사결과,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.
- (4) 폐를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, 임상증상과 폐기능 또는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(5) 폐를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폐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.

나. 폐기능의 검사

- (1) 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.
- (2) 폐기능은 1초시 강제날숨량, 폐확산능, 강제폐활량 등의 측정치를 말한다.
- (3) 동맥혈산소분압(PaO₂)은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의 측정치를 말한다.

<폐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>

구분	검사항목	경도 이상	중등도 이상	고도 이상
1	1초시 강제날숨량	40% 이하	30% 이하	25% 이하
2	폐확산능	40% 이하	30% 이하	25% 이하
3	강제폐활량	50% 이하	40% 이하	25% 이하

※ 모든 수치는 개인별 정상예측치를 기준으로 한다.

<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>

구분	검사항목	경도 이상	중등도 이상	고도 이상
1	동맥혈산소분압	70mmHg 이하	60mmHg 이하	55mmHg 이하